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2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 등 시정 변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 주도의 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로 우리 구(區)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몰 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칙에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명 시함.

O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2012.3.15.)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도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련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바 있음.
- 서울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운영 예산을 '23년부터 미편성하여 사업 실적이 없어짐.
- 이와 맞물려 마을공동체 사업 중 마을자치센터 운영의 재위탁 기간과 마을활력 소 운영비 지원이 종료되고, 마을공동체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사료됨.
- 다른 한편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부담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본 조례의 폐지 목적이 있다고 여겨짐.
- 다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타 서울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구(區) 사업으로 환원 후 '24년도 예산으로 편성 및 추진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제 297 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 등 시정 변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1. 4.~1. 24./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